

「2023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」

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광역사업팀 김세훈 과장 ☎ 031-270-9839

1 사업개요

○ 기 간 : 2023년 4월 ~ 12월

○ 대 상 : 상세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
※ '21년, '22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수혜자 지원 가능

| 대상 | 상세요건 | |
|----------------|--|--|
| ① 배달 노동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 배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|
| ② 대리운전 노동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대리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 | |
| ③ 중소 배달대행 사업주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사업장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 배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|
| ④ 중소 대리운전업 사업주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대리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사업장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| ※사업장 관리번호 기준, 최대 30인까지 지급 |

○ 규 모 : 플랫폼 배달 및 대리운전 노동자, 중소 사업주 3,000건

※ 선착순 모집 원칙(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)

○ 내 용 : 산재보험료 납부액의 80% 최대 12개월 지원('22년 10월 ~ '23년 9월)

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배달노동자 및 배달업 사업주 | '22년 10월 ~ '23년 6월 | 월 5,750원(원 단위 절사) × 산재보험료 납부 개월 수 |
| | '23년 7월 ~ 9월 | 월 11,510원(원 단위 절사) × 산재보험료 납부 개월 수 |
| 대리운전 노동자 및 대리운전업 사업주 | '22년 10월 ~ '23년 6월 | 월 5,530원(원 단위 절사) × 산재보험료 납부 개월 수 |
| | '23년 7월 ~ 9월 | 월 11,070원(원 단위 절사) × 산재보험료 납부 개월 수 |

※ 지원금액은 최대가능금액이며, 납부한 보험료가 종사자부담액 보다 낮으면 지원금액은 감소 할 수 있음

※ 고위험·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경감 고시 적용(고용노동부고시 제2022-48호)

▶ 월별 지원금액 산정 기준

<배달노동자 및 배달업 사업주>

| 구 분 | 기준보수(월) | 보험료율 | 보험료(월) | 특별감면(50%) | 종사자 부담 | 지원금액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'22.10. ~ '23.06. | 1,599,400 | 0.018 | 28,789 | 14,395 | 7,197 | 5,758 |
| '23.07. ~ '23.09. | 1,599,400 | 0.018 | 28,789 | - | 14,395 | 11,516 |

<대리운전 노동자 및 대리운전업 사업주>

| 구 분 | 기준보수(월) | 보험료율 | 보험료(월) | 특별감면(50%) | 종사자 부담 | 지원금액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'22.10. ~ '23.06. | 1,537,500 | 0.018 | 27,675 | 13,837 | 6,919 | 5,535 |
| '23.07. ~ '23.09. | 1,537,500 | 0.018 | 27,675 | - | 13,837 | 11,070 |

- 산재보험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월 보수월액에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매월 산정하며, 사업장의 산재보험 월별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
- 기준보수월액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유형 중 킷서비스업종, 대리운전업종의 기준보수월액 적용함
- ※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1-59호 에 따른 기준보수 적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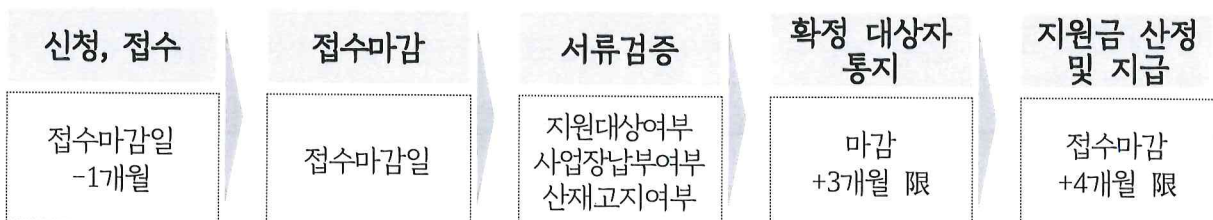
- (지원범위) 2022년 10월 이후 납부내역을 소급하여 지급 (신청시기 무관)

▶ 지원범위 예시

| 구분 | 2022년 | | | 2023년 | | | | | | | | | | | | |
|--------|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|-----|--|
| | 10월 | 11월 | 12월 | 1월 | 2월 | 3월 | 4월 | 5월 | 6월 | 7월 | 8월 | 9월 | 10월 | 11월 | 12월 | |
| 월별 지원액 | 배달 | 5,750 | 5,750 | 5,750 | 5,750 | 5,750 | 5,750 | 5,750 | 5,750 | 5,750 | 11,510 | 11,510 | 11,510 | 지원 제외 기간 | | |
| | 대리 | 5,530 | 5,530 | 5,530 | 5,530 | 5,530 | 5,530 | 5,530 | 5,530 | 5,530 | 11,070 | 11,070 | 11,070 | | | |
| 모집 기간 | | | | | | | 1차 | | | 2차 | | | 3차 | | | |
| 조회 기간 | 1회차 대상기간 | | | | | | 모집 | 조회 | 지급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2회차 대상기간 | | | 모집 | 조회 | 지급 | | | | |
| | | | | | | | 3회차 대상기간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모집 | 조회 | 지급 | |

※ 2022년 동일 사업으로 '22년 10월, 11월, 12월 산재보험 지원금 수령자는 동일 기간('22년 4분기) 지원 제외

- (지원방법) 산재보험료 부과지/납부내역 조회 후 보험료 납부내역이 최종 확인되어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지원자에 대해 분기별 지급
- (지원체계)



2 신청방법

○ 일 정 * 선착순 모집으로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

- (1차) 2023.04.24.(월) ~ 05.15.(월)
- (2차) 2023.07.04.(화) ~ 07.31.(월) (예정)
- (3차) 2023.09.12.(화) ~ 10.12.(목) (예정)

○ 방 법 :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접수(<https://apply.jobaba.net/>)

* PC 또는 모바일 접수 가능

- 지원 희망자 본인 신청 또는 사업주 대리신청 접수

1) 본인 신청 시 : 사업페이지 신청메뉴 내 양식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제출

2) 사업주 대리신청 시 : 지원 대상 배달노동자별 및 대리운전노동자별 증빙서류
취합 후 이메일(rider@gjf.or.kr) 발송

○ 구비서류

① 본인 신청 시

- 본인 명의 통장사본 또는 가족 명의 통장사본

* 통장사본은 사진 촬영본, 인터넷 통장표지출력, 통장 개설내역 확인서 등 자율 업로드

* 지원 신청서, 개인정보 동의서, 주민등록 등·초본은 통합접수시스템을 경유하여 접수

* 가족 명의 계좌로 입금 희망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수

② 사업주 대리신청 시

- 사업주 대리신청서

- 사업자등록증

-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부과내역 조회 ('22년 10월~'23년 6월) (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)
(<https://total.comwel.or.kr/>)

- 2023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서(사업주)
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(사업주)

- 통장사본(사업주)

- 2023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서(지원 대상자별)
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(지원 대상자별)

- 통장사본(지원 대상자별)

3] 참고사항

-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 상 허위사항 또는 기재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
- 보험료 납부내역 조회를 위해 재단에서 지원자가 소속된 사업주를 대상으로 증빙서류 또는 정보조회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를 징구할 수 있음
 - 사업주가 증빙서류 제출 또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하지 않아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보험료 납부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신청서 접수 가능
 - ⇒ 납부내역이 확인되는 시점에서 소급하여 보험료 일괄 지급 예정
- 신청서나 각종 증명(빙)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 될 경우 선정을 취소하며, 지원비용 전액 환수 및 향후 사업 참여 불가
-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이 아닌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자*는 지원 대상이 아님
 - *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(중·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)에 따른 가입자
- 선정된 지원자가 향후 이직·퇴직으로 근로계약 조건이 변경·소멸될 경우 보험료 납부내역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며, 이 경우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 - 변경사실이 발생한 시점에서 변경된 사업장 정보를 재단에 통지 필요
 - ※ 변경사실 미통지로 인한 지원 중단 등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
- 유사사업 참여하여 산재보험료를 지원받은 사실이 있거나 지원이 예정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됨
 - 예) 성남시 특수고용직·예술인·영세사업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한 지원금 수령자
- 모든 증빙서류는 공고일(모집 시점)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해 유효
-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
- 사업문의 : 북부사업본부 북부광역사업팀 (031-270-9839, 9842)
- 산재보험 제도 관련 문의 :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(1588-0075)